

행정자치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등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 ○○○○○)

관 련 자 ① ○○○○○○(전 ○○○○○) 지방○○○(전 지방○○○) ○○○

② ○○○○○○(전 ○○○○○) 지방○○○(전 지방○○○) ○○○

③ ○○○○○○ 지방○○○ ○○○

④ ○○○○○○(전 ○○○○○○) 지방○○○ ○○○

⑤ ○○○○○○ 지방○○○ ○○○

⑥ ○○○○○○ 지방○○○ ○○○

⑦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1. 2. 15.부터 2013. 7. 11.까지 실무책임자로, 지방○○○ ○○○은 2011. 7. 11.부터 2013. 10. 16.까지, ○○○○○○ ○○○은 2013. 10.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지방○○○ ○○○은 2012. 8. 3.부터 2015. 7. 7.까지 실무책임자로, 지방○○○ ○○○은 2013. 12. 2.부터 2015. 11. 24.까지 ○○○○○○에서

지방○○○ ○○○은 2015. 7.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 지방○○○ ○○○은 2016. 1.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공무원 범죄사건 처분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라 함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참조),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참조)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참조).

그러나 ○○○○○, ○○○○○○, ○○○○○에서는 소속 공무원인 ○○○○○○○, ○○○○○○○,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의결 요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무원 징계제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위 비위 공무원 중 ○○○○○○○, ○○○○○○○, ○○○○○○○의 경우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 ○○○ ○○○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은 위 공무원의 비위사건 조사 결과를 ○○○○○○에게 보고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시 당연퇴직되어 징계벌을 과할 실효성이 없는 사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